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316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2.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9. 2. 22. 접수 제2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가단694호로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0.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C는 동해시 D 지상에서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19. 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9. 2. 22. 접수 제222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탁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866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우선수익자인 E조합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C는 2018. 6.경 동해시 D 지상에 F아파트 G동을, H 지상에 F아파트 I동을 신축하면서 E조합으로부터 2018. 10. 12. 동해시 D 토지를 담보로 69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8. 12. 17. 동해시 H 토지를 담보로 66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② C는 2019. 1. 14. F아파트 G동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E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E조합은 2019. 2. 22. 1,0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중 692,000,000원 상당은 F아파트 G동의 부지인 동해시 D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 ③ E조합은 2019. 2. 22. 위 1,0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C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절차와 담보 목적물 현장답사 및 대출심사위원회의 검토,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대출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금액을 1,339,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였다.
- ④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수익권증서금액과 대출금, 대환대출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대출과정이나 내용에 있어 특별히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⑤ 나아가 E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E조합이 선의인 이상, C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택순

별지